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안내]

- (1) 본 안내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 분들은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자가 기후솔루션의 채용사이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하신 서류는 채용절차법 제11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기후솔루션의 채용서류 반환 의무가 면제됩니다.
- (2)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180일 이내에 작성하여 이메일 (work@fourclimate.org)로 제출해 주시면, 반환청구서가 수신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우편(수신자 부담)으로 반환해 드립니다. 또한 180일의 청구기간 경과 즉시 파기합니다. 다만 기후솔루션 채용사이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구직자께서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불가항력 사유로 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이메일 작성 시 제목은 [채용서류 반환청구]로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반환청구서 양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을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 (3) 채용과정 중 제출하신 포트폴리오와 기타 서류들은 채용을 위한 검증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그 이외의 목적으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기후솔루션 드림